

국가인권기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

주(註) 1

특정 국가, 영토, 도시, 지역 혹은 국경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본 책자에 지칭된 명칭과 수록된 자료들은 유엔사무국의 견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자료들은 자유롭게 인용 또는 재출판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출처는 명시되어야 하며, 재출판된 자료가 포함된
책자의 시본 1부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로 보내야 합니다.

HR/P/PT/4

주(註) 2

본 책자는 유엔전문교육훈련시리즈(Professional Training) 제4호를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

세계인권회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국가
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존중하고, 각 회원국이 국가 차원에서 자
신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
정한다.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편 36절)



머리말

유엔인권센터가 1994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전문 교육 시리즈의 제 4권인 본 책자를 소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시리즈의 다른 책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서도 기술협력프로그램(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을 보완하고, 동시에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구조의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권은 개인과 개인, 개인들과 국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권보호의 실질적인 책무는 일차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것이며,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엔은 1946년부터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거나 강화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러한 기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구조와 기능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른 것은 불과 지난 수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룩한 기념비적인 업적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1993년 유엔 총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세계인권회의는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을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것으로 재확인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이러한 기구들을 강화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유엔은 국가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보호의무를 준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적합한 국가기구의 모델로서 어느 한 가지 모델을 권장할 수도 없으며 권장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는 있겠지만,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당사국의 문화 및 법적 전통, 그리고 기존의 정치체제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유엔은 국가기구들을 설치 또는 강화하기를 원하는 모든 회원국들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센터는 지난 수 년 동안 기술협력프로그램에 의거해 수많은 국가들에게 전문 인력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회원국들에게 국가인권기구를 설립 또는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주제인 국가인권기구가 현재 각국 정부들과 국제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인권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러한 국가인권기구들은 유엔의 인권기구들 또는 비정부 인권단체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은 분명히 보완적인 것이며, 이들을 강화하는 것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호세 아이알라 라소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가인권기구 안내서

Contents_

머리말	6
감사의 말씀	8
본서에서 인용된 국제인권제도	15
서론	17
A. 본서의 목적	17
B. 본서의 구성	19
1장. 국가인권기구: 배경 및 개요	21
A. 인권체제	21
1. 유엔과 인권	21
2. 대륙별 인권체제	22
3. 비정부기구	23
4. 정부	23

감사의 말씀

본서는 유엔인권센터의 기술협력팀(Technical Cooperation Branch)이 편찬했습니다. 초안에 대한 논평과 제안을 해 주신 국가인권기구들과 개인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B. 국가인권기구관련 유엔 활동	24
1. 경제사회이사회의 초기 활동	24
2. 국가인권기구의 기준과 목표의 설정	25
3. 1991년 제1차 파리 국제인권회의	27
4. 1991~1993년 동안의 활동	28
5.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29
6. 1993년 제2차 튀니스 국제인권회의	30
7. 유엔 이외의 활동	31
C. 국가인권기구의 정의	31
D. 국가인권기구의 실제	33
1. 분류의 어려움	33
2. 인권위원회	35
3. 특별인권기구	37
4. 옴부즈만	38

2장.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41
A. 서론	41
B. 독립성	43
1. 법적 및 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44
2.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45
3.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46
4. 구성을 통한 독립성	47
C.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48
1. 업무영역관할	48
2. 관할의 충돌 방지	50
3. 적절한 권한	52
D. 접근성	53
1.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	53

2. 물리적 접근성	54
3. 대표성 있는 구성을 통한 접근성	55
E. 협력	55
1.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56
2.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	57
3. 정부간 기구들과의 협력	59
F. 운영의 효율성	60
1. 적절한 자원	60
2. 업무 방식	62
3. 인사	62
4. 심사 및 평가	64
G. 책임성	66

3장. 인권 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68
A. 서론	68
B. 홍보 전략	70
1. 자료의 수집, 생산 및 배포	70
2. 홍보행사의 조직과 지역사회의 인권운동 장려	73
3. 언론매체와의 협력	74
4. 국가인권기구 및 그 활동에 대한 홍보	75
C. 교육 및 훈련	77
1. 전문 훈련	77
(a) 대상자 파악	78
(b) 프로그램 수립	79
(c) 적절한 훈련강사의 선정	79
(d) 훈련 효과의 극대화	80
(e) 평가	81

2. 세미나	81
3. 교육 프로그램	82
4장.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지원 활동	84
A. 서론	84
B. 기본 사안	85
1. 요청 혹은 직권에 의한 권고	85
2. 적절한 책무	86
3. 효과적 절차의 개발	86
4. 권고 받는 자의 책임	87
C. 기존 법률 및 제출된 법안의 심사와 입법안의 성안 과정에서의 지원	88
1. 입법 감시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	88
2. 법률에 대한 권고 기능과 기타 기능들과의 관계	89
3. 권고대상	89
4. 입법안	90
5. 기존 법률	90
6. 새로운 법률의 성안	91
7. 효율성의 극대화	91
D. 일반정책 관련 권고 및 행정 관련 권고	92
1. 국가적 현안 관련 정책 권고	93
2. 행정 제도와 관행 관련 권고	94
3. 재판과정에서의 권고	95
4. 국제인권사안 관련 자문	95
E.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관련 자문 및 지원	96
1. 국제인권규약 이행 관련 자문제공	96
2. 정부보고서 작성 지원	9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 지원	99

5장. 인권침해 조사 활동	100
A. 서론	100
B. 진정 조사	101
1. 진정 제도의 중요성	101
2. 진정 제도의 수립	102
(a) 조사 가능한 진정의 범위	102
(b) 적절한 제한규정	104
(c) 진정 대상	106
(i) 제삼자 진정	107
(ii) 집단진정	107
(d) 진정 제출 절차	108
(e) 비밀보장	109
(f) 진정의 각하	110
3. 진정의 조정	111
4. 조사	112
(a) 조사 권한	113
(b) 조사 절차	114
5. 인권침해의 구제	116
(a) 권고 권한	117
(b) 이첩 권한	117
(c) 결정 권한	119
(d) 강제명령 권한	119
(e) 결정의 공표	119
C. 직권에 의한 조사 혹은 직권에 의한 공개조사	120
1. 조사를 위한 주제 선정	122
2. 직권조사 수행	123
3. 후속조치	124
D. 재판과정에서의 관여	124
결론	126

부록	127
I.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127
II. 유관기관 연락처	132
III.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 사항	133
IV. 국제인권장전	135
참고문헌 목록	172

본서에 인용된 국제인권제도

약어

모음집 : '인권: 국제인권제도 모음', 제1권 (2개 편으로 구성),
보편적 제도 (유엔출판물, 판매번호 E.94.XIV.I)

국제인권장전	출처
세계인권선언	총회 결의안 217 A (III), 1948년 12월 10일 (모음집, p.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총회 결의안 2200 A (XXI), 1966년 12월 16일, 부록 (모음집, p. 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총회 결의안 2200 A (XXI), 1966년 12월 16일, 부록 (모음집, p. 2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총회 결의안 2200 A (XXI), 1966년 12월 16일, 부록 (모음집, p. 41.)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총회 결의안 44/128, 1966년 12월 16일, 부록 (모음집, p. 4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총회 결의안 2106 A (XX), 1965년 12월 21일, 부록 (모음집, p. 66.)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총회 결의안 34/180, 1979년 12월 18일, 부록 (모음집, p. 15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총회 결의안 39/46, 1984년 12월 10일, 부록 (모음집, p. 29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총회 결의안 44/25, 2989년 11월 20일, 부록 (모음집, p.17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총회 결의안 45/158, 1990년 12월 18일, 부록 (모음집 p.554)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 1993년 6월 25일(A/CONF.157/24 (Part I), chap. III)



|서론|

A. 본서의 목적

1. 본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작되었다. 현재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국가들이 늘어감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2. 국가인권기구들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역량과 효과성은 해당 기구가 위임받은 법적 책무와 직결된다. 설립법 상 취약하거나 비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인권기구들은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구조적인 결함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서는 국가인권기구를 새로이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또는 실제로 계획과정 중에 있는 정부와 기타 집단들을 최우선 대상집단으로 삼는다. 이 집단들을 위해서, 본서는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다양한 목적들과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요소들을 요약해 주고, 이러한 기구들이



위임받을 수 있는 적절한 책무들에 대해 심층분석을 해 준다. 입안과정상의 실제적인 지원은 특정한 목적, 요소, 또는 책무들에 적용될 수 있는 입법사례의 형태로 제공된다.

3. 본서의 두 번째 대상집단은 기존의 인권기구들, 이들을 설립한 정부들,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운영에 참여하는 집단들이다. 기존의 인권기구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국가인권기구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책무를 위임하거나, 보다 강력한 권한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립법을 수정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인권기구를 강화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설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를 위해서도 이러한 본서가 유사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법률의 개정이 없으면, 기존의 국가인권기구들은 설립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본서는 해당 기구가 위임받은 기능과 권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각국의 기존 국가인권기구들은 조직 및 기능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국의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 상이성을 극명하게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는 입법을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없다. 본서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원형 또는 “이상적” 인권기구를 제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어떠한 모델 국가인권기구도 있을 수 없으며, 특별한 규정도 있을 수 없다. 그 대신, 본서의 독자들은 많은 국가 다양한 인권기구들이 이룩했던 성과들, 직면했던 고충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근거로 해서 마련한 지침들과 권고사항들을 제시받게 될 것이다. 또, 본서의 정보들은 유엔 내외에서 개최되었던 각종 회의들에서 얻은 결과물들, 그리고 유엔인권센터(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감수자주])가 각국 정부들에게 이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특히, 아래에서 논의될 (25-27절 및 부록 I 참조)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B. 본서의 구성

5. 제1장은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현 상황의 역사적 및 법적 배경을 요약한다. 인권체제와 인권체제 내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위에 관해 개관하고, 1946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이 이 부문에서 수행한 활동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그 다음에는 정의(definition) 문제를 다루고, 국가위원회, 특별위원회, 옵스즈만 등 가장 일반적인 분류의 기준들을 요약한다.

6. 제2장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요소들을 논의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운영에 통합되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7. 제3장, 4장, 5장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수행할 3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은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권교육, 제4장은 정부에 대한 자문과 지원 활동, 제5장은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다룬다. 3가지 업무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8. 본서에는 많은 부록들이 첨부된다. 부록 I에서는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이 제시된다 (25-27절 참조). 부록 II에는 각국 정부와 새로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 국가인권기구의 강화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유용할 각종 연락처 및 정보제공처들의 목록이 제공된다. 부록 III에서는 국가인권기구 부문에서 활동 중인 유엔 인권센터의 기술협



력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선별한 참고문헌 목록에는 주로 유엔 문서들 및 국가인권기구와 관련 있는 기타 출판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1장| 국가인권기구: 배경 및 개요

A. 인권체제

9.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구축된 복합적, 다층 구조의 체계 중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다. 아래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 기능과 책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권체계를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 유엔과 인권

10. 유엔헌장 서문에서, 유엔은 “인류의 후손들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보다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성취하기 위하여”라는 확신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유엔헌장 제1조에서는 유엔의 목적들 중 하나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와 무관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11.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45년 동안 유엔은 현장에 명시된 인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국제 규정 및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

12. 이 강력한 입법 기반의 토대 위에 국제기준들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기준들의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기준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광대한 인권기구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회원국들의 인권 증진 및 보호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홍보활동 및 기술협력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더욱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다.

13. 이러한 체제와 활동들은 유엔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쟁취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설정하는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업무는 하나의 조직체가 떠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유엔은 범세계적인 인권존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모든 개인, 모든 집단, 모든 기구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전제하에 인권활동을 하고 있다.

2. 대륙별 인권체제

14. 세계인권체제는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에서의 지역인권체제(Regional human rights systems)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륙별 인권체제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환경하에서 인권문제를 처리할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기준과 기구들의 강화에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해 왔다.

3. 비정부기구

15. 해당 지역사회와 비정부기구 역시 세계인권기준의 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은 범세계적인 인권존중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 비정부조직들은 그 속성 상 표현의 자유, 행동의 유연성, 활동의 자유를 보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특정 상황 하에서,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다.

4. 정부

16. 지난 20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주요 인권조약들에 가입하였으며, 따라서 자신들이 동의한 인권기준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인권 문제는 개인 간,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권보호의 실질적인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의 몫이다. 국가 차원에서, 권리는 적절한 입법, 독립적인 사법부, 보호 및 구제 조항의 제정과 집행, 민주적 기구들의 설치와 강화 등을 통해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 인권증진 활동들과 인권문화의 발달도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들은 국가 또는 지방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행되고, 또 해당 지방의 문화적, 전통적 배경을 고려한 것들일 것이다.

17. 국가가 하나의 인권협약의 회원국이 되면 해당 협약의 규정들을 국내법에 편입 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날의 범세계적인 인권기준들과 규범들은 대다수 국가들의 국내법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허다하다. 왜냐하면, 특정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제도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8.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이행 문제가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 관심과 행동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권의 법적, 정치적 기반의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구들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적 지배 체제가 발생하고 회복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 그러므로 효과적인 인권의 향유를 위해서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인권보호를 명시적 기능으로 하는 기구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의 세부적인 직무는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만, 이들의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들을 총칭하여 국가인권기구라고 하는 것이다.

B. 국가인권기구관련 유엔 활동

1. 경제사회이사회의 초기 활동

20. 국가인권기구의 문제는 유엔 총회에서 “모든 국민들과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기 2년 전인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21. 1946년 2차 회의에서 경제사회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유엔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정부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 내에 정보그룹(information groups) 또는 지역 인권위원회(local human rights committees)를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¹⁾하도록 요청하였다. 14년 뒤, 국가인권기구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1) 1946년 6월 21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9, sect. 5.

것임을 인정하고, 각국 정부들에게 이러한 기구들의 설치와 지속적인 운영을 권장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결의안²⁾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 되었다.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접수된 정보에 대한 보고서는 사무총장이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 총회, 그리고 회원국들에게 제출하고 있다.

2. 국가인권기구 기준과 목표의 설정

22. 1960년대와 1970 년대에 인권기준 마련에 가속도가 붙자,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들은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들의 효과적인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19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특히 국가인권기구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78년 9월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역 기구 관련 세미나(Seminar on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³⁾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세미나에서 일단의 지침들이 승인되었다. 동 지침들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정부와 국민들을 위한 인권정보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 여론에 대한 교육 및 인권의식 증진 지원
- 국내의 모든 특수한 상황 및 정부가 위임하는 사항들에 대한 검토, 심의 및 권고
- 정부가 위임하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자문 제공
- 인권증진을 위한 입법, 사법적 결정, 행정적 제도 등의 상황 연구, 감

2) 1960년 7월 25일 경제사회 이사회 결의안 772 B (XXX)

3) ST/HR/SER.A/2 및 Add.1, 참조



토 및 적절한 관계당국에 동 사항관련 보고서의 제출

- 인권 관련 국제 제도에 국가가 가입함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들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임하는 기타 기능의 수행

이 지침은 국가인권기구들의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한다.

- 인구의 모든 집단들이 인권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성에 있어서 국가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포함할 것
- 정규적 활동을 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들 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긴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방 또는 지역 자문기구들(local or regional advisory organs)이 이들의 기능을 일부 대행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23. 동 지침은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회에서는 아직 인권국가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사무총장에게 기존 국가인권기구들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 1980년대 내내 유엔은 동 주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쏟았으며, 사무총장이 작성한 일련의 보고서가 총회에 보고 되었다. 이 기간에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설립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유엔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3. 1991년 제1차 파리 국제인권회의

25. 1990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인권기구 및 지역인권기구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의 개최를 권고했다. 워크숍의 목적은 국가인권기구들과 유엔 및 유엔 산하 기구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간의 협력방식을 검토하고, 국가인권기구들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1차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들에 관한 국제적인 워크숍이 1991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열리게 되었다.⁴⁾ 워크숍의 합의사항들은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1992/54에 의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원칙”)으로 승인 되었으며, 뒤 이어 1993년 12월 20일에 채택된 총회 결의안 48/134에 의해 재승인 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책무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26. 1978년 채택된 지침 (22절 참조)을 개선하고 확대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특히 다음과 같은 책무들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부, 의회, 그리고 기타 모든 관계기관에 인권 문제와 관계있는 모든 사안 (법률 및 행정적 규정들, 그리고 모든 인권침해 상황을 포함)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제안(proposal), 보고서(report)의 제출
- 국내법과 관행들을 국제인권기준에 더욱 일치하도록 할 것
- 국제기준의 비준과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
- 국제인권제도의 보고 절차에 기여할 것
- 인권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들의 마련과 시행을 지원하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한 대중의 인권의식 제고

4) E/CN.4/1992 및 Add.1 참조



- 유엔, 대륙별 인권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과의 협력

또, 파리원칙은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지침들에 입각하여 이 같은 책무들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정, 구속력 있는 결정 또는 기타의 수단을 통한 우호적인 타결의 도모
- 진정인에게 자신의 권리와 가용한 구제(redress)수단들에 대해 알려주고, 그러한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진정을 심사하거나 관계기관으로 이송
-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방해하는 법률(laws), 규칙(regulations), 또는 행정 관행(administrative practices)을 수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27.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원칙)에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운영방식 등에 관한 세부 지침들도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의 전문은 본서의 부록 I에 수록되어 있으며, 원칙의 기본 정신은 다음에 소개되는 지침들과 권고안들에 반영되어 있다.

4. 1991-1993년 동안의 활동

28. 1991년 이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관련 활동이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수많은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회

의들은 다음과 같다.

- 아테지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던 제 2차 인권문제에 관한 아테지역 유엔 워크숍 (자카르타, 1993년 1월)⁵⁾
- 관용 및 화합 증진과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가인권기구 및 기관 대표회의 (시드니, 1993년 4월)⁶⁾
- 제 2차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 워크숍 (튀니스, 1993년 12월)⁷⁾

5.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29. 1993년 세계인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인권회의와 동시에 국가인권기구 회의를 개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목적, 대표성과 접근성을 비롯한 적절하고 효율적 기능을 위한 핵심 요건들, 기구 간 활동의 조정을 위한 메카니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30.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은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및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원칙 등 많은 주요 원칙들을 확인했으며, 21세기까지 지속될 인권활동에 관한 야심찬 일정을 수립했다. 비엔나선언에서 세계인권회의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천명했다.

....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역할, 특히 관계당국에 권고 권한(advisory capacity), 인권침해의 구제, 인권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인권 교육... (1편 36절)

5) HR/PUB/93/1 참조.

6) A/CONF.157/PC/92/Add.5 참조.

7) E/CN.4/1994/45 및 Add.1 참조.



또 다음과 같이 장려(encourage)하기도 했다.

...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권고하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존중하고... (상동)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recognize)했다.

... 회원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특정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상동)

31. 세계인권회의는 회원국 정부들에게 국가인권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유엔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강화시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또는 강화와 관련한 회원국들의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으며,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 지역인권기구들 및 유엔간의 협력,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을 권고했다. 또,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체제를 개선할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엔인권센터의 후원 하에 정기적으로 국가인권기구 대표 회의들 소집할 것을 권고했다.

6. 1993 제 2차 튀니스 국제인권회의

32.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제 2차 국제 워크숍이 1993년 12월 13-17일 튀니스에서 개최되었으며⁸⁾, 전세계 28개 이상의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가인권기구들과의 관계, 국가인권기구 상호 간의 관계, 국가인권기구와 유엔인권센터와의 관계를 비롯한 수많은 상호 관심사들을 논의했다. 워크숍은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115절 참조)를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또, 국가인권기구들에게는 자신들의 지위와 활동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⁸⁾ 상동

에 관한 파리원칙(25-27절 참조)에 부합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등 수많은 권고안들을 채택했다.

7. 유엔 이외의 활동

33. 일부 국제 기구들, 특히 영연방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과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34. 영연방사무국은 수많은 국제 및 국내 워크숍을 후원해 왔으며, 방대한 자료를 축적해 놓고 있다. 그러한 자료 중에는 영연방 국가들의 기존 국가인권기구 명부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원하는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국의 법률을 비교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다.

35. 세계옴부즈만협회는 최근 수년 동안 옴부즈만들의 인권 활동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알베르타에 위치한 세계옴부즈만협회는 전세계 모든 옴부즈만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출판물과 회의를 통해 옴부즈만 상호 간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C. 국가인권기구의 정의

36. 국가인권기구의 활동과 기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엔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을 분석해 보면 아직까지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의 초기 인권활동에 대한 개념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직간접



적인 역할을 하는 거의 모든 국가기구들을 국가인권기구에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탄력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ombudsman, 기타 관련 기구들과 함께 사법부, 행정재판소, 입법부, 비정부기구, 법률지원사무소,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직과 제도가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되었다.

37. 그러나 그 후 유엔의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와 같이 광범위한 초기의 개념은 점차 특정한 공통적 기능들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한 기능들로는 인권의 교육 및 증진 활동, 정부에 대한 인권문제에 관한 자문, 공공기관(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관도 포함)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조사 및 해결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 방식을 취하면, 초기에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에 포함되었던 사법부, 입법부, 사회복지기구 등이 제외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궁극적인 정의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38.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25-27절 참조)은 이러한 개념의 진화 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권고 기능에 대한 기준을 정의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기준들에 입각하여 정의하면, 국가인권기구란 “위원회”로 명명된 기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인권 분야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다 포괄적인 기능의 정부기구들과(행정재판소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모든 기구들은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에서 제외되게 된다.

39. 이와 같이 개념정리 작업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개념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개념이 경우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일단은 국가인권기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라는 용어는 유엔의 인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 법률(law or decree)에 의거하여 정부가 설립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 국가인권기구들의 실제

40. 실제로 있어서 상기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구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행정기구”이다.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법기구”도 아니고 입법기구도 아닌 것이다. 통상 이들 기구들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 현안들에 관해 지속적인 권고 권한(advisory authority)을 부여받는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견제출 및 권고, 또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제출하는 진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결(resolution)한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도 많다.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행정부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독립성의 수준은 조직의 구성, 재정, 운영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1. 분류의 어려움

41. 이와 같이 공통적인 특성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정확한 분류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대다수 국가인권기구



들은 “인권위원회” 또는 “옴부즈만”이라는 2가지 대분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2. 인권위원회는 보통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직결되는 보다 구체적인 책무들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조언 기능 (인권 관련 법률과 정부 정책에 관한 기능), 교육 기능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능), 그리고 소위 공정한 조사 기능 등이 포함된다. 여러 인권위원회들 상호 간의 차이점은 주로 이 특정 기능별 비중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광범위한 종류의 권리들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수도 있고, 역으로 특정 취약집단의 보호에 활동에 한정될 수도 있다.

43. 이와는 대조적으로,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조사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옴부즈만 사무소 중 많은 사무소들은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감시하는 자신들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권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일부 옴부즈만 사무소들, 특히 최근에 설립된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특정한 인권 보호, 특히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인권의 보호에 관한 책무들을 부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44.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기구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한 기구가 특정한 명칭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그러한 명칭이 암시하는 기능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옴부즈만”이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특성으로 인식되는 광범위한 범주의 인권 증진 및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인권위원회”라고 명명된 기구가 전통적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인 공공행정에 대한 감시의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활동을 하기도 한다.

45. 이렇게 일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명칭에 따른 분류는 독단

적인 면이 없지 않으므로, 기능적 분류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기능적 접근방식에 따라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구분과 분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명칭에 따른 분류 역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기존 국가인권기구들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아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위원회, 특별위원회, 옴부즈만과 연관되는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2. 인권위원회

46. 많은 국가들에서 인권보호 관련 법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인권위원회들은 입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인권위원회들은 정부의 다른 기관들로부터 독립해서 책무를 수행한다.

47. 인권위원회는 본질적으로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각 위원은 인권 부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자들이다. 각국은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특별한 요건 또는 제한 규정을 둔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직종별, 정당별, 또는 출신 지역별로 대표 또는 후보의 수를 할당한다.

48. 인권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시민 및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특정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의 정확한 범위는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정의되어지는데, 특히 조사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차별행위 및 침해 행위의 범위를



명시하게 된다. 일부 위원회들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개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또 다른 일부 위원회들은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또는 민족, 장애, 사회적 환경, 성적 지향, 정치적 의견, 가문, 연령, 혼인 여부 등 광범위한 이유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다룰 수 있도록 되어있다.

49. 인권위원회에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능 중의 하나는 개인(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으로부터 기존 법률에 반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 권한은 드물게 사용되지만, 이것은 진정을 접수한 당사자나 진정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업무수행이 좌절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권한이다. 인권위원회들이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절차에는 상호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많은 인권위원회들은 주된 해결 수단으로 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를 활용한다. 조정 과정에서 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쌍방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를 하는데, 위원회가 증언을 청취한 다음 결정을 내린다.

50. 인권위원회가 진정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권고하는 화해(settlement)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구제조치가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법원이 미해결 진정사건 중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들에 관한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린다.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해결 진정사건을 정식 법원으로 이송(transfer)하여 최종적인 구속력 있는 판결을 받도록 한다.

51. 인권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정부의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인권보호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국제법에 대한 국가의 국내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한다.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는가의 여부가 인권위원회의 전반적인 권능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으로 진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특히 중요한 기능이다.

52. 법률과 행정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완벽한 인권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인식 제고라는 중대한 책무가 인권위원회에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의 증진 및 교육을 위해서 인권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
- 인권 부문의 여러 가지 중대사안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들의 조직
- 상담 및 회의를 기획 및 주선
- 인권 관련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3. 특별인권기구(Specialized institutions)

53. 국가마다 취약 집단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취약집단들은 차별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특별인권기구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은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 소수집단, 원주민, 무국적자(non-nationals), 재외이주자, 이주자, 난민, 어린이, 여성, 빈민, 장애인 등이다.



54. 특별인권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취약집단이나 취약집단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 및 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이러한 기구들은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인권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보통 해당 집단의 구성원 또는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 사례와 관행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특별 인권 기구들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 타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 또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는 드물다.

55. 이러한 기구들은 개인 또는 집단에 자료와 상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들 집단에 관련되는 기존 법률과 헌법 규정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책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별인권기구들은 의회와 행정부의 컨설턴트 및 자문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4. 옴부즈만

56. “옴부즈만” 사무소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설치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 국가에서는 민중옹호자(Avocat du peuple, Defensor del Pueblo), 국가중재자(Mediateur de la Republique)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옴부즈만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은 일반적으로 헌법 또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의회가 임명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영연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국가수반이 임명하며, 옴부즈만은 국가수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57. 옴부즈만의 일차적인 책무는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감

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옴부즈만 사무소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정부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58. 각국의 옴부즈만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할 때에는 유사한 절차를 따른다. 옴부즈만은 개인들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하고, 진정의 내용이 자신의 권한 내의 것이면 조사에 착수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정부 관리들을 포함하는 증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compel)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옴부즈만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명서(statement) 또는 권고안(recommendation)을 발행한다. 이 성명서는 보통 진정인과 진정대상인 관계기관이나 당국에 전달된다. 옴부즈만은 권고안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옴부즈만이 조사 결과 파악한 문제점들에 관한 내용과 입법, 행정상의 개선안을 담고 있는 연례 보고서와는 별도로 의회에 제출된다.

59.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믿는 국민은 누구나 옴부즈만에게 진정을 제출할 수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그에 앞서 먼저 다른 모든 법적,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진정을 제출하는데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옴부즈만의 권한은 공공행정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만, 대다수 옴부즈만들은 의회의원 또는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못한다.

60. 옴부즈만에게 진정을 제출하는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많은 국가들의 경우 개인이 옴부즈만 사무소에 직접 진정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같은 중재인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옴부즈만에게 제출된 진정은 대개 비밀에 부쳐지며, 진정인의 신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다.

61. 옴부즈만은 진정이 들어 온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옴부즈만 사무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판단되는 문제들, 또는 집단 전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진정을 제출하기에 부적절한 문제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62.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옴부즈만의 권한은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상당히 유사하다. 두 기구 모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원칙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기구의 기능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이 두 가지 기구들을 모두 설립,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대다수 옴부즈만의 일차적인 기능은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권위원회는 주로 인권 침해, 특히 차별 행위를 다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위원회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이나 관리에 대한 개인들의 진정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기 때문에 두 기구 사이의 구별이 점점 더 모호해져가고 있다.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인권증진 부문, 특히 교육 활동과 정보 프로그램 개발을 점점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2장|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A. 서론

63.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국 정부는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국가인권기구의 체제(framework)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30절 참조). 이 조항에서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설립하는 기구들에도 이와 같이 국가간에 존재하는 중대한 차이점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64.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4절 참조) 본서는 국가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중대한 차이점들을 무시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이 될 만한 특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서의 주목적은 각국의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의 개발을 권장하고 촉진시키는 것이다. “적절성(appropriateness)”은 특정 국가인권기구의 체제가 당사국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기준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효율성(effectiveness)”은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들의 인권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65. 국가인권기구는 적절성은 효율성에 선행한다. (관할, 권한, 또는 기타 조치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국가인권기구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인권기구에게 적합한 일률적인 규칙들을 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본 장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일반적 지침들만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적절성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의 경험, 특히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들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66. 그러므로 본 장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인권기구들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보장하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그 개념상 공통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통적인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하는 “효율성을 위한 요소들”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독립성
- 명확한 관할 및 적절한 권한
- 접근성
- 협력
- 운영 효율성
- 책임성

67. 본 장은 6부분으로 구분되며, 각 부분에서는 상기의 효율성을 위한 요소들 중 한 가지씩 다루고 있으며, 해당 효율성 요소가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한 다음에는 해당 효율성 요소가 국가인권기구의 체제와 기능에 통합되는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B. 독립성

68. 효율적인 국가인권기구란 정부나 정당 정치 또는 그 밖의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황들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말한다. 독립성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일정한 독립적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 기구들과는 구별되지만,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정의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법은 국가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명시하며, 기능에 관한 한계를 규정한다.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국가와의 관계와 법률이 정한 책무에 의해 필연적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완벽한 독립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현실적 요인은 보고 의무와 재정적 자율성의 결여이다. 이와 같이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기구라는 점과 그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기구가 비정부기구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69.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가 확보할 수 있는 독립성은 어느 정도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독립성의 의미는 전후관계를 따져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어떠한 기능



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기구를 설립할 때는 언제나 독립성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다. 그러나 그 한계가 해당 국가기구가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여서는 안 된다.

1. 법적 및 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70.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특히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그 설립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가인권기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이고 확실한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국가인권기구가 갖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는 정부의 특정 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들로부터 간섭 또는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를 의회나 행정부 수반의 직속 기구로 만들면 된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밖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71. 운영의 자율성이란 국가인권기구가 여하한 개인, 조직, 부처,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는 절차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규정들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 또,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안, 보고서 또는 결정은, 설립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당국 또는 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72.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의 업무의 속성 상, 다른 기구들의 협력, 특히 정부 기구들이 협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법에 미리 정부기관들이 국가인권기구에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으

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립법에 모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들은 정보 요청,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협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2.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73. 재정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재정적 자율권이 없는 국가인권기구는 재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정부 부처 또는 기타 기구의 영향을 받게 된다.

74. 가급적이면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설립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국가인권기구가 기본적 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기구가 연간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을 의회에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가인권기구에 재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역할은 재무제표의 심사와 평가로 국한된다.

75.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든지 간에 국가인권기구의 예산이 정부 부처의 예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가인권기구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secured)하여, 국가인권기구의 특정한 결정이나 활동이 예산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적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진정 절차나 대정부 권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특정 부처와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76. 재정적인 자율성은 적절하고 지속적인 예산 배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운영 효율성” (121-124절 참조)을 다룰 때 자세히 논의한다.

3.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77. 모든 기구는 구성원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해당 기구의 독립성이 결정된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활동과 집단적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법적, 기술적, 심지어 재정적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78.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조건들은 설립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립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임명 방법
- 임명 기준
- 임기
- 재임 여부
- 해임권자 및 해임 사유
- 특권과 면책

79. 구성원의 임명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회와 같은 대의기구에게 임명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설립법에 투표 및 기타 절차를 비롯한 임명 방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임명 기준에는 국가

인권기구의 구성원으로 임명되기 위한 전제조건들 (국적, 직업, 자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임기의 경우, 고위 간부들은 확정 임기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짧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기존 기구들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80. 해임권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립법에 구성원의 해임 요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해임 사유는 당연히 조사 가능한 중대한 과실(wrongdoing)과 연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도 해임 사유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임 권한을 가지는 기구나 개인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해임권을 의회 또는 동등한 수준의 고위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81. 국가인권기구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책을 부여하는 것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장치이다. 특권과 면책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은 공적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4. 구성을 통한 독립성

82.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및 정치적 다원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가 진정한 다원성(pluralism)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성(diversity)이 반영되어야 한다.



83.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25-27절 참조)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에 대하여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적절한 사회적 집단, 특히 비정부단체, 노조, 전문가 집단, 철학 및 종교적 사조들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를 구성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의회 또는 정부 관리들을 옵서버 또는 자문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표성과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84. 진정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원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해당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가 남성들만으로 구성되거나, 어느 특정 인종으로만 구성될 경우,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85. 많은 국가의 경우, 옵부즈만은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국가인권기구가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대표성 있는 구성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위원회 같은 체제나 다수의 옵부즈만으로 구성되는 옵부즈만 사무소들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개인들로 구성되므로 독립성을 완벽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다.

C.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1. 업무영역 관할(Subject-matter jurisdiction)

86.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가 되려면 그 업무영역의 관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업무영역관할은 설립법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할은 국가인권기구의 기능들을 검토함으로써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 교육, 정부의 입법 지원,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들 해당 국가인권기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고, 따라서 업무영역관할의 일부가 된다.

87. 국가인권기구의 기능들에서 업무영역관할의 범위를 대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능을 검토함으로써만 업무영역관할의 내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관할은 특정한 기능의 정확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은 헌법 상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국한될 수 있다. 또, 국가가 가입한 국제인권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는 국가인권기구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확실한 이점들이 있다.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국가인권기구들은 국내에서 이러한 의 기준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인권관련 법률규정들과의 차이점들을 파악하고, 조약감시기구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을 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211-214절 참조)

88. 업무영역관할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할 경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관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 자체가 정부에게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철저한 계획을 거쳐 국가인권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와 그러한 우선순위를 건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관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게 정의된 국가인권기구는 분명하게 정의된 상태에서 활동하는 국가인권기구에 비하여 추진력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된 임무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거나 중



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책무에 매달리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89. 업무영역관할은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관들의 범주와 관련이 있다. 이 범주는 특정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감시하는 책무를 가진 옴부즈만과 같은 유형의 기구는 정부부처 및 정부 대행기관, 그리고 공무원들만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보다 폭 넓은 기능을 가진 기구는 정부는 물론 개인, 공기업 및 민간기업, 그리고 기관들도 인권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90. 마지막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명확한 체제를 갖추면 국가인권기구가 설립 목적에 따라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상인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분명한 혜택이 돌아간다. 수혜 대상자들에게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와 기능을 널리 알리는 것 자체가 실효성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과정은 설립 목적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범위가 정해져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경우에는 더 용이하다.

2. 관할의 충돌 방지

91. 국가인권기구의 업무영역관할이 다른 기구의 관할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술적인 충돌로 인해 양 기구 모두 효과성이 저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립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사한 기구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계획하는 정부들은 인권, 법률 개정, 그리고 기존의 행정기관의 심사체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를 새롭게 창설하는 목적은 다른 기구들이 수행할 수 없는 (또는 수행하고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창설되는

기구는 기존 기구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구들을 보완하는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92.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진정된 사건을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그 관할은 사법부의 관할권과 중복될 수 있다. 특히, 인권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국가가 사법적으로 강제(enforceable)할 수 있는 권리장전이 있는 경우에 중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은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alternative dispute-resolution mechanism)으로서 국가인권기구에 진정을 할 것이다. 아래의 5장에서 논의하겠지만, 국가인권기구가 진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접근성, 유연성, 신속한 조치, 전문지식의 제공,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나 심지어 무료로 진정 업무를 처리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원 대신 국가인권기구의 진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의 장점에 상관없이 사법부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한, 국가인권기구는 사법부의 기능을 보완할 뿐이지 결코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 재판권은 법원에 있다.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고 해서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할권이 중복되는 사례는 빈번하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93. 더구나, 현안 문제가 법률 상 재판에 회부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의 진정절차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4. 현재 국가인권기구라고 간주될 수 있는 기구를 2개 이상 설립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옴부즈만 사무소와 병행하여 인권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한다.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는 특정 취약 집단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한 국가 내에 여러 개의 위원회들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사한 기구들 간의 관할권 충돌과 중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충돌과 중복 문제는 기구별로 명확한 기능을 정하고 중복되지 않게 기능을 부여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기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발전 및 유지시키고, 동시에 기구간의 사건 이송을 통해 상호 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고 관할권 중복 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사한 기구간의 긴밀한 접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설립법에 명시하면 기구 간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3. 적절한 권한

95. 여기서 말하는 권한이란 국가인권기구가 특정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권한은 반드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또, 국가인권기구가 주어진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을 경우, 법적인 제재조치나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되어야 한다.

96. 국가인권기구가 부여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한들 또는 최소한도의 권한들을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권한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만 부여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에겐 과도한 권한도 불충분한 권한만큼이나 유해하다. 국가인권기구는 주어진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국가인권기구가 보유하는 권한이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하려면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97. 적절한 권한에 대해서는 본 서의 3장부터 5장까지 각 기능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D. 접근성

98.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가 되려면 설립 목적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 주려는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은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 조직 및 절차상의 모든 요소들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한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대중의 신뢰를 받는 것으로 평판이 있는 국가인권기구들은 이러한 국민의 신뢰에 따라 접근성을 자동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진정한 들, 관련 기관 및 부처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관심을 갖는 국가인권기구는 접근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경우가 있다.

99.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

100. 국가인권기구의 수혜 대상자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할 경우, 국가인권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기구도 수혜 대상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활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개인 또는



집단들은 정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람들은 “공식” 기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는 이들 특히 취약한 집단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101.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 전략에 관해서는 인권의 증진과 교육을 다루고 있는 제3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물리적 접근성

102.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는 이외에도 수혜 대상자들이 물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세계의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인구밀집지역에 사무소 하나만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먼 곳에 살고 있거나 원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은 사무소를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지방 사무소들을 설치하여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국가인권기구 본부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역할 혹은 ‘상담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103. 이와 같이 국가인권기구의 사무소를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정책은 명백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지역별로 활동하는 현장 요원들을 모집하는 방안도 있다. 현장 요원들은 정보 보급과 참고인 면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 중에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104.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의 업무방식이 물리적 접근성에 주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절차상 진정인과 참고인들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출석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면 물리적 접근성이 즉각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3. 대표성 있는 구성을 통한 접근성

105. 국가인권기구는 독립성과 더불어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혜 대상 집단들을 비롯한 시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상기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82-85절 참조).

E. 협력

106.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 (25-27절 참조)에서는 “국가인권기구들은 유엔과 유엔 체계 내의 모든 기구들,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지역인권기구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국가인권기구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다른 기구나 집단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미 그러한 집단으로 유사 인권기구들과 사법부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 두 집단도 국가인권기구가 추구하는 법규 준수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과의 협력 및 협조를 통해 자신이 주도하는 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전반적인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107. 파리원칙이 인정하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기구들과도 유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1.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108. 국가인권기구는 직간접적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들 및 사회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들은 일반대중들에게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60-163절 참조). 비정부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강화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인권기구 설립법을 성안하는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비정부기구들의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자문 혹은, 심지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국가인권기구는 사회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다.

109. 국가인권기구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해야 하는 두 번째의 실질적인 이유는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직접 공식 기구에 찾아와서 제소를 하거나 구제를 신청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비정부기구가 인권침해의 피해자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110. 셋째, 비정부기구들은 성격상 그리고 기능상 인권 및 기본적 자유권을 존중하는 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상적인 협력 기관이다. 비정부기구들은 업무 상 유연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내 인권상황, 제도적, 법률적 부적절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국가인권기구에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변화를 비롯한 각종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국가인권기구가 맡은 바 소임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 정보는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제공받을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제공받는 것을 제도화할 수도 있다.

111. 마지막으로 비정부기구와 지역사회단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 훈련, 정보 보급 등의 분야는 협력과 협조 활동에 있어서 특히 적합한 분야이다. 그 밖에도 국가인권기구는 특정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 기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특정한 조사나 연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은 연구나 조사를 실시할 때 통상적으로 관련 비정부기구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2.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

112. 최근 수년 동안 국가인권기구들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 기회도 크게 확대 되어왔다.



113. 대부분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인권기구들이 새롭게 창설되었거나 아직 규모가 작은 기구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협력 방식은 협력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국가인권기구를 창설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는 기존 기구들로부터 법률을 성안하는 과정, 인력 모집과 훈련, 그리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실제적인 지원과 지도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기구 내에 진정 메커니즘을 갖추려고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따라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인권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114.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은 유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협력은 쌍방에게 도움이 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합작사업과 연구 또는 조사 프로젝트들의 공동 수행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보의 교환도 또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협력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자의 경험과 업무 방식을 서로 비교하고, 보고서와 출판물을 교환하는 한편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현안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기구들이 정기적으로 인력을 교환하는 방안을 통해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보의 흐름을 강화할 수도 있다.

115. 1993년 12월 튀니스에서 열린 제2차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에 관한 국제 워크숍에서 각국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남미 및 북미의 국가인권기구들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를 설립했다. 조정위원회는 튀니스 국제 워크숍에서 채택된 권고안들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고,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공동으로 실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

엔인권센터(현 인권고등판무관실, [감수자주])와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 1995년 필리핀의 제3차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책임도 담당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안 1994/54 (7절)를 통해 조정위원회 설립 결정을 환영했다.

3. 정부 간 기구들과의 협력

116. 국가인권기구들은 정부 간 기구들(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지식을 통해 자신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117. 정부 간 기구들은 자원과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할 이외에도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접촉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유엔은 각국간에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촉진시킨다는 구체적인 목적하에 정기적으로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매년 열리는 국제인권회의들 중 상당수의 회의에 참석을 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이러한 회의들을 통해 스스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118. 정부 간 기구들과의 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이 본서 전반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다 (특히 부록 II 참조).



F. 운영의 효율성

119. 다른 모든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기구도 최대한 효율성이 높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은 인력 모집 및 선발, 업무 방식 및 절차의 개발, 정기적인 실적 심사 등 업무의 모든 측면들과 관계가 있다. 물론 거대한 관료 조직의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이 불가피하며,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국가인권기구들은 조직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인력과 자원은 부족한 반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의 비효율성은 당연히 국가인권기구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0. 운영의 효율성은 본서의 제한된 지면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주제이다. 따라서 다음에 기술하는 내용은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국가인권기구의 일부 측면들을 살펴보는 데 그칠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지적해 둘 점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외부의 전문 지식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다.

1. 적절한 자원

121.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이 담당해야 할 세부적인 책임과는 관계없이 활동을 개시하기 전부터 일정한 기본적 요건(인력 및 부동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인력과 적절하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가능하면 예산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73-76절 참조).

122.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해 놓고, 충분한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 결과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23. 그러나 인력과 자금 면에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가인권기구에 포괄적인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자금과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현재 영향력 있는 대형 국가인권기구들이 주로 유럽, 북미의 선진국들, 그리고 호주에서 설립되었다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대규모의 국가인권기구들을 운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책무를 갖는 소규모의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4. 어떠한 국가도, 국가인권기구의 인력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금이 남아도는 가운데 운영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철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확정된 예산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외부의 협력자들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록 II에는 국가인권기구의 역량강화 및 특정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2. 업무 방식

125. 국가인권기구는 거의 예외 없이 업무 방식과 절차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실무진의 구성, 진정사건의 조사 절차, 그리고 직원 회의의 시기와 빈도 등 많은 사안들의 관리 기준이 된다. 업무 방식과 절차를 개발하고 준수하는 목적은 모두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또는 전통만을 고집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은 존중받을 수 없으며,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만들어 냈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것이다.

3. 인사

126. 직원들의 효율성, 대표성, 그리고 공정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운영과 대외 이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스스로 지원인력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인력의 모집, 선발, 그리고 훈련에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기본적 기능
- 업무 분장
- 개인적 자질
- 채용 후보자 경력
- 모집 및 선발
- 훈련
- 실적 평가

127. 국가인권기구는 기본적 기능들을 토대로 철저하게 업무 분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분장의 내용들 이외에도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후보자의 경력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를 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라면 국내 및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법규 및 법률 초안을 분석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 내용이 업무 분장의 기초가 된다. 한편, 이러한 업무 분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개인적 자격 요건들을 결정한다. 필요한 자격요건은 법률적 지식 및 경험, 편집 능력, 의회 기안 절차의 경험, 분석 능력 등이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따라 후보자 경력이 고려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28. 모집 및 선발 과정은 후보자의 경력을 기초로 해야 하며,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선발 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모집 광고를 해야 하며,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인원 선발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시에는 항상 다원성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고위 관계자들의 모집, 선발, 그리고 임명에서 특히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신뢰도는 국가인권기구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대중적인 신뢰도에 정비례하여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129. 국가인권기구는 특수한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신규 채용된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수행할 업무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증진이라는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이 부문에 관한 타당한 수준의 지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권에 관한 교육훈련 활동을 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자체 인력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의 기안, 전문가 선정, 세미나 진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한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인권기구는 참고인 면담 및 기타 후속조치 등 특수한 조사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 권고와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는 직원들에게 협상 기술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30. 국가인권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직원 각자에게 맞는 지식 및 기술 교육 코스를 마련하고, 발전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개인별 실적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내부 업무 방식과 절차들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직원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면, 이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된다.

4. 심사 및 평가

131. 대다수의 국가인권기구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고는 책임성의 문제이므로 아래의 G항에서 논의된다. 심사와 평가는 이와는 구별되는 다른 사안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체 조사를 말한다.

132. 건설적인 심사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외부 기관에 의해 목표가 설정되고, 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인권기구는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자체 평

가기준이 실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기준들은 직원 개인의 실적과 국가인권기구의 전반적인 목적 및 목표 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33. 국가인권기구는 특정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활동의 목적과 잠재적 수혜 대상자 또는 대상집단들의 기대치를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훈련코스는 대상집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기술적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코스는 참가자들의 기대치(훈련코스 구성 전에 확인한 기대 수준)를 고려하여 구성된다. 훈련코스를 완료하고 나면 교육자와 교육 대상자 모두의 기대치가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심사를 실시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기술적 능력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정말로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뒤를 이어 심사 작업도 실시한다. 국가인권기구는 향후 훈련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두 가지 평가 결과들을 활용한다.

134. 전체 프로그램의 평가나 특정한 기능의 평가는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정보 프로그램의 심사와 평가는 정보 프로그램의 목적들을 기준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 목적들 중 하나가 기구를 널리 알리는 것이라면, 보급된 정보의 양, 접수된 문의 또는 요청 건수를 비롯한 몇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다.

135.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모두 입수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 외부적 정보는 국가인권기구의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수집된다. 내부적 정보는 국가인권기구 자신의 기대치를 기준으로 한 실제 프로그램의 실적 평가를 근거로 수집한다.



G. 책임성

136. 국가인권기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 위상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인 기관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목표들을 기초로 하는 성과 책임제(system of accountability)를 개발해야 한다.

137. 국가인권기구는 설립법에 의거해서 예외 없이 정부나 의회에 대해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성은 보고 의무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의회나 유사한 감독 기관에 자신의 활동들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책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고 요건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들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보고의 빈도
- 특별 보고서의 제출 가능 여부
- 보고 사항
- 보고서 검토 절차

138. 국가인권기구는 기구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수혜 대상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에 대한 책임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가 자신의 활동에 관한 대중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국가인권기구의 모든 공식 보고서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공개 토론을 장려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외부적으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실적 기준들을 널리 알릴 수 있다. 보고서의 출판과 배포를 통해 투명성을 제

고시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3장|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 교육

A. 서론

139. 단순히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을 시행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인권 보호를 구현할 수 없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40. 증진(promotion)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포괄적인 단어이며, 광범위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기구의 목적과 책무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구는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구로 간주한다.

- 인권에 대해 알리고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
- 인권을 수호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촉진하는 활동
-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를 장려하는 활동

141.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 인권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인권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보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이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신이 타인들에게 지는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142. 어떠한 경우이든 정보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인권을 완전히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인권 증진이란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문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식을 현실화시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43. 인권 존중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끊임없는 경계(vigilance)가 필요하다. 내부적 감시는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 역시 타인의 인권을 침해 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외부적 감시는 집단 또는 개인들에게 인권수호 활동에 동참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수호 활동은 적절한 인권보호제도,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알리고 활용을 장려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가능하다.

144.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부간 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많은 인권증진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들을 비롯한 국내 인권활동의 주체들은 인권 기준의 이행 책임이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 특정한 인권 메카니즘이나 이행전략을 채택하여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145. 국가인권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인권의식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법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법령에 목적만이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인권기구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46. 본 장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식의 제고와 교육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태도의 조성을 통해, 그리고 인권수호 활동의 장려를 통해 인권을 증진시키는 과정들을 논의한다.

B. 홍보 전략

1. 자료의 수집, 생산, 및 배포

147.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 자료들을 보유해야 한다. 또,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148. 국가인권기구가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과 범위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옴부즈만 형태의 기구가 수집하는 정보 자료들은 광범위한 인권 책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가 수집하는 자료들에 비해 보다 적은 분야에 국한될 것이다. 이런 경우 문서 및 훈련을 담당하는 센터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9.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주어진 책무와 관련된 특정 자료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자료들을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연례 보고서를 비롯한 국가인권기구 자신에 대한 정보
- 국제인권제도(instruments)와 기준 (해당 국가의 비준여부 및 유보에 관한 정보 포함)
- 조약감시기구에 국가가 제출하는 보고서 및 이 보고서들에 대한 조약기구들의 논평(comment)
- 인권관련 국내법규와 그러한 법규를 해석 또는 적용한 행정 및 사법 결정
-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적 메카니즘 (다른 국가인권기구, 의회 위원회(parliamentary commissions), 각료 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s),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에 관한 정보
- 국제적 이행 메카니즘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정보

위의 정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 활동 특정분야에 관한 추가자료 등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정부 부처, 비정부기구들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기구들의 메일링리스트(mailing list)에 올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가인권기구들은 유엔이나 대륙 인권기구에서 작성하는 각종 인권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겠다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본서의 부록 II에는 인권 정보 자료와 문서들을 발행하는 주요 기구들(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150. 국가인권기구는 당연히 자체적 연구 활동으로 얻은 결과물도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중요한 통계자료를 입수할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인권기구들 중 대다수가 인권 현안 및 상황에 관한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계기가 되어 국가인권기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의 성과를 다른 정부 부처나 기구에 전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연구 프로젝트는 특정 인권 현안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연구의 결과들은 국가인권기구가 축적하여 중요한 인권 현안들에 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151. 국가인권기구는 연구 보고서 외에도 다른 자료를 출간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나 특정한 인권 현안에 관한 정보자료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자체 제작한 자료들은 관련 정보와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다. 국가인권기구는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자료들을 제작함으로써, 국내법규와 현실을 접목시켜 대중들이 다른 외부 기관에 의하여 제작된 자료들 보다 더욱 쉽게 접하도록 만들 수 있다.

152. 정보의 수집과 제작은 그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전략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효과적인 배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을 선정했으면 가용한 정보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형식이나 스타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대중들에게 배포할 정보라면 특정 주제에 관한 가용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쉽게 읽고 배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꾼다. 당사국에서 2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모든 언어로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한편, 관련 자료들을 인권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읽고, 쓰고, 복사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153. 효과적인 배포 전략의 다음 단계는 적절한 배포 수단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단계 역시 해당 자료의 배포 대상자들이 누구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관련 문서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수혜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할 일반정보 자료들은 학교, 도서관, 정부 사무소,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에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는 대학, 관계부처, 또는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기구들을 통해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일반적인 언론 매체나 전문적인 언론 기관들도 정보 보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홍보행사의 조직과 지역 사회의 인권운동 장려

154. 국가인권기구는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인권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인권 의식을 널리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홍보 행사에는 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을 주제로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개최, 대학이나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강의, 인권의날(세계인권선언 기념일: 12월 10일)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 전시회 및 특별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일부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 구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155.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홍보 활동들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에 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인권기구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인권기구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용한 자원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언론매체와의 협력

156. 많은 국가들의 경우 언론매체들이 사상의 형성과 의견 표출 과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다른 영향력 있는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언론매체들도 경우에 따라 인권을 수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157. 인권 증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주로 사회 및 정치적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의견과 표현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의견을 보유할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 언론이 인권 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언론 역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정부의 통제(government control)를 (명시적인 한도 내에서의 통제 제외) 받지 않고, 비민주적인 이익 집단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

158. 여론의 형성과 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언론은 인권 의식을 제고시킬 책임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홍보 프로그램들 중 언론의 참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내용은 언론이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일부 사례이다.

-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기능, 그리고 각종 활동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역할
- 일반인에게 자신들의 인권, 타인에 대한 의무, 또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준수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교육 실시
- 인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의견과 권고안들을 배포하는 활동
- 국내 또는 국제 인권 상황이나 현안들을 중점 보도하고, 그러한 상황 또는 현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발표

159. 많은 국가들의 경우,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홍보 전문가나 언론 관계자들을 고용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기구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려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료 또는 할인 방송 시간 또는 신문 지면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국가인권기구는 직원들이 인터뷰 진행 및 보도자료 작성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국가인권기구 및 그 활동에 대한 홍보

160. 국가인권기구는 일반대중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로부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인 또는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



보급의 경우에서처럼, 이 전략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인 설립 목적, 현재의 인권 상황, 인권 의식 제고와 홍보활동을 위해 국가인권기구에게 가용한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

161.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다른 기구들의 도움을 얻어야 하지만(162-163절 참조),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인권기구 자신에게 있다. 국가인권기구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 수행한 활동들의 절차와 성과에 관한 정보를 널리 배포하는 것이다. 국가인권기구가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으면, 이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조사에 관한 권한을 알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도 매우 다양하다.

162.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및 비정부기구들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의 협조와 지원을 구할 수 있다. 정부기관 및 정부부처는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와 활동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행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할 때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권한은 잠재적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할 권리와 진정절차를 알고 있을 때에만 유용하다. 그러므로 관계 부처들은 자신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 결정에 대하여 진정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는 각 부처가 발행하는 자료에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수록하는 방법을 통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 역시 스

로 적절한 자료들을 제작하고, 정부 기관들이 해당 자료들을 보급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 기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행정상의 공정성 및 합법성을 감시하는 책임을 가진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기구의 서비스를 활용할 사람들에게 그 기구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163. 국가인권기구는 인권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사회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효과성을 증대시켜 준다(108-111절 참조). 비정부기구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비정부기구들은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기구의 서비스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C. 교육 및 훈련

1. 전문 훈련

164. 국가인권기구는 다양한 집단들에게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들을 교육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인권에 관한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훈련 과정들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인권에 관한 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은 그러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훈련의 적절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있다.

사법 행정

- 변호사, 판사, 검사
- 경찰 및 치안 담당 인력을 비롯한 법집행공무원
- 교도관
- 법무사(paralegals)

정부 및 의회

- 의회 의원
- 법률 성안과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정책 수립과 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국제인권조약감시기구들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

기타

- 사회 복지사
- 군인
- 언론인
- 비정부인권기구 및 지역사회단체
- 교사 및 교사들의 훈련강사
- 노조 임원
- 의료인
- 지역사회 지도자

165. 훈련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a) 대상자 파악

166. 교육 효율성 측면에서 볼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호한 원칙

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대상자들의 실제 활동방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교육 과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

167. 교육 대상자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정부 부처나 또는 기구에서 국가인권기구에게 교육훈련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주어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양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특정 집단별로 그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b) 프로그램 수립

168. 모든 전문가 집단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각 교육 과정은 각각의 교육 대상자들에게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참가자들이 일상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특정 대상 집단이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권 현안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169. 그러나 교육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인권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국제인권제도의 내용과 해당 인권 체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도록 개발된 국내 법규와 메커니즘에 관한 개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c) 적절한 훈련강사의 선정

170.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문에서 경험이 있는 훈련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를 들어, 경찰에게 이론에 강한 교수와 이론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 보다는 가능한 한 교육 대상자들의 출신 배경과 업무 환경에 익숙한 요원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171. 훈련강사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 기법을 잘 알고 있는가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을 할 때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상호 작용적인 교육 방법을 강조해야 한다.

(d) 훈련 효과의 극대화

172.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음에는 자신들이 타인들에게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교육을 마치고 자신의 직장에 복귀하면 교육훈련을 담당하거나 정보를 보급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고 교육 대상자들을 선발하면 가능한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중에 보급된 정보들이 해당 기관들에 널리 배포되면 교육과정의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훈련강사들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각각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게 하는 것이다.

173.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교육이 종료된 후에 문서화된 자료들이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정보를 보급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들의 직무 분야와 관련된 국제인권기준들에 관한 출판물들은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정한 대상집단을 위해 다수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자체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 평가

174. 교육과정에는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작업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설문 조사를 할 경우, 훈련강사들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대상자들의 기대치를 파악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이 완료된 후에 평가를 실시하면, 교육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향후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세미나

175. 세미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과는 달리 운영 기술(operational skills)을 알리기 위하여 작업하지 않고도 지식을 전하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다. 전문가들과 기타 집단들은 인권에 관한 세미나를 통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인권 문제와 가능한 해결 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미나는 강의 위주의 일반 교육 훈련 과정의 분위기와는 달리 대학의 토론식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할 지 파악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세미나를 통해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요한 인권 현안들을 논의하고,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자신들의 리더십을 통해 공식적인 집단이나 혹은 비공식적인 집단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76. 교육훈련과정 (164절 참조)에 대한 상기의 원칙들은, 일부는 수정되어야겠지만, 대체로 세미나에 적용된다. 준비 과정에서는 논의 될 주제를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들을 신중하게 선정한다. 세미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참가자들은 여론이나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발표자들은 해당 주제의 부문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토론을 원활하게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3. 교육 프로그램

177. 국가인권기구는 이미 인권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조직, 기구, 개인들과 유익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

178.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인권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인권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인권기구들은 교육 활동의 중점을 학령 아동들에게 두고 있다. 이 집단의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의 개념을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교과 과정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지원하며 교사와 교사들의 훈련강사들에게 강의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교육자들과 공동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179. 국가인권기구는 대학 수준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인 권은 법률, 언론, 의학, 정치 및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대학 운영자들과 교사들에게 세부적인 인권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에 인권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인권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

들, 또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학생들에게 인권 정보자료를 제공하려는 교사들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180. 물론, 제도권 교육 이외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들이 전문가 집단, 노조, 지역사회단체 또는 비정부기구들과 공동으로 특정 집단을 위한 비공식적 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도 있다.



성안 작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권문제가 관련된 진정에 관여(예를 들어 법정 조언자로서)할 수 있다. 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정부에 통고할 의무와 이러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할 책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국제인권기준의 이행을 감시하고, 해당 국가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정부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4장| 정부에 대한 권고(advising) 및 지원(assisting) 활동

A. 서론

18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에서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25-27절 참조) 국가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관계당국의 요청에 따라, 혹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고 권한을 행사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상급기구의 의견, 권고, 제안이나 자문 등을 구하지 않고 또 보고하지 않고도 정부, 의회 기타 관계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182. 대다수 국가인권기구들은 의회,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 인권문제에 관한 권고를 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권한은 다양한 형태로 부여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관련 부처 또는 공무원에게 통고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갖는다. 국가인권기구는 제출된 법안 또는 기존 법률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거나

B. 기본 사안

1. 요청 혹은 직권에 의한 권고

183. 국가인권기구가 직권에 의하여 정부에 권고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여부는 설립법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인권기구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문을 제공하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있고, 요청이 없어도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또는 기타 문제에 관해 국가인권기구의 의견을 묻도록 법률에 규정되는 예는 거의 없다.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부문의 전문지식과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발적으로 의견이나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고기능(advisory role)을 부여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부문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나 어느 특정 부문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예를 들어 인종차별, 여성 또는 아동의 권리 등)는 국가가 관련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보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다. (211-214절 참조).



2. 적절한 책무

184. 특정 기구가 적절한 권고를 할 책무는 어느 정도 해당 기구의 기능과 권한들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진정 메커니즘을 가진 국가인권기구는 거의 예외 없이 특정 진정사건이나 일련의 진정사건들에 관하여 정보를 주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의 관계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정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185. 특정 국가인권기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은 이 기구가 권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독립성이 부족한 국가인권기구는 현명한 권고를 할 수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해서, 광범위한 권한과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기구는 정보를 입수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보다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권정보를 확보하여 우수한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효과적 절차의 개발

186. 실제 권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정보와 의견을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권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법률 분석, 협상, 보고서 작성 및 구두 발표 능력 등의 특정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해야 한다.

4. 권고 받는 자의 책임

187. 국가인권기구의 권고 권한은 아무리 폭넓게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전문적으로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권고 받는 자가 그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기구의 권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에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들은 이러한 권고를 제공하고, 전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법에 이러한 절차를 규정해 놓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립법에서는 정부는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한 권고안과 실천 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188. 권고안을 전달하고 그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한 권고안들이 이유 없이 무시되거나 묵살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권고안을 아무런 해명 없이 검토도 하지 않거나, 묵살해 버린다면 정부의 인권증진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189.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도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C. 기존 법률 및 제출된 법안의 심사와 입법안의 성안 과정에서의 지원

190.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진정 절차가 사법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인권기구의 기존 법률 또는 제출된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도 법률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다른 정부기관들의 책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이러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회, 사법부, 행정부에게 있고, 국가인권기구는 다만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할뿐이다.

1. 입법 감시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

191. 국가인권기구가 입법부문에서 정부에 권고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입법과정에서 감시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적합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인권기구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규를 일상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법규들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입법기구 또는 집행기구들이 간과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한편, 수정안 또는 개선안을 제안하기에 매우 적합한 위치에 있다. 국가인권기구가 법률의 집행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법률상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국가인권기구가 주어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률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한 인권문제들로 인해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법률에 대한 권고 기능과 기타 기능들과의 관계

192. 인권침해나 특정 인권문제에 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는 입법 상의 부적절성(legislative inadequacies)을 지적하기에 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의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구금에 관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하거나, 수용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차별에 관한 조사 결과, 특정분야에서 차별철폐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는 법률적 개선 또는 기타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3. 권고대상

193. 기존 법률이나 제출된 법안에 관한 권고를 받을 자는, 논리적으로 볼 때, 의회 자신인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기구는 법률의 성안 또는 입법활동의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의회 내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에는 의회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이 인권의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안을 의회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행정부의 고위 관리도 국가인권기구의 설립법에 의거해서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안을 접수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194. 기존 법률 또는 제출된 법안에 관한 권고안이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가 여러 국가기관들에게 자신들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률, 규칙, 행정 관행을 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것을 제안하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는 특정 정부 부처에 법규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입법안

195.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철폐하는 것보다 제출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에 관한 논평(comment) 또는 권고(advise)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밟는다.

- 인권에 관한 내용이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 초안 의 파악(범죄, 사법 행정, 가족, 이민, 선거, 국적, 사회 보장 등에 관한 법안들이 포함될 수 있음)
- 법안이 국제적 및 국내적 인권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 법안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

위의 세 가지 단계 중 마지막 두 가지 단계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부, 의회에서 법률을 성안한 집단,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제출하다.

5. 기존 법률

196.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는 활동 과정에서 기존 법률이 안고 있는 인권 상의 문제점 또는 부적절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가 밟아야 할 절차가 설립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입법상의 부적절성 파악
- 국가 및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법률의 인권적 측면 연구
- 해당 법률의 집행 또는 감시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의 파악
- 해당 정부기관 또는 의회와 논의하거나 보고서 제출

6. 새로운 법률의 성안

197. 국가인권기구는 기존의 법률이나 제출된 법안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법률의 성안을 지원하는 권한도 부여받을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을 성안하는 것이, 위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국가인권기구의 주도적 결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에 통합시키기 위해 새 법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필요한 권한과 기술적 역량을 갖춘 국가인권기구는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이러한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정부 내외의 집단들과 관계를 수립하거나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의 성안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7. 효율성의 극대화

198. 법률에 관한 (제출된 법안, 기존 법률, 성안 중의 법률 포함)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안들이 입법부 또는 정부의 관계 부처들에 의해 묵살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어떤 경우에 국가인권기구의 의견과 권고가



무시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인권기구의 권고나 지침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며, 인권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와 법률에 규정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 그러나 국가인권기구가 입법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여러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 강화할 수 있다. 적절한 인력 훈련 등 기본 단계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는 스스로에 대하여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익단체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 기술의 개발은 행동을 취하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의 시점도 중요하며, 의회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에 출석하는 시점과 최대한 근접한 시점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D. 일반정책관련 권고 및 행정 관련 권고

200. 국가인권기구는 법률을 검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일반 정책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하고, 기존의 행정제도에 대한 논평을 할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이 권한은 대단히 유용한 기능이며, 많은 개인들의 일상적인 인권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항상 국가인권기구의 권고 기능은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역량에 따라서 강화되기 마련이다.

1. 국가적 현안 관련 정책권고

201.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184-185절 참조), 국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권고의 역량과 이에 대한 잠재적 효과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부여받은 다른 책임들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인권기구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인권에 해가 되는 정부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해 알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숙자(homelessness)에 관한 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정부 대책의 부적절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조사가 의료보험, 사회보장, 가족법에 관한 정책 권고안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재판의 판결 관행이나 구금 중인 소수민족의 구성 비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법 집행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도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정부와 일반 국민들에게 이 같은 문제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02. 국가인권기구는 정부 정책 또는 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관계 기관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기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러한 기준들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법집행공무원의 선발, 훈련 및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3. 모든 인권침해 사례의 직접적인 원인을 입법 상의 부적절성이나 불공정한 행정 관행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인권침해는 직장,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도 발생한다. 차별적인 고용 정책, 인종적 증오심의 선동,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은 주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며, 따라서 공공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



기구는 이와 같이 “감추어진”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종류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최소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 밖의 활동의 필요성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2. 행정 제도와 관행 관련 권고

204. 개인이 정부 부처나 정부 기관에 의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느낄 경우, 가장 먼저 연락하는 대표기구가 국가인권기구가 되는 적극적인 국가인권기구들도 있다. 한 개인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조사는 만연한 인권문제를 파악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완전하게 향유되는 것을 침해하는 관료주의적 관행을 적발하고, 그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조직의 계층간에 책임의 조정(coordination), 배정(allocation), 수락(acceptance) 과정에서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이러한 행위나 제도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재판과정에서의 권고

205.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이 완전하게 향유되는 것을 저해하는 재판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평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가 감시

(monitoring)해야 할 인권들에 대해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인권으로는 자격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 무죄의 추정,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료로 통역을 받을 권리, 상급 법원의 심리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과정과 관행에 관련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이러한 권리들이 존중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을 근거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4. 국제인권 사안 관련 자문(advise)

206. 대다수 국가인권기구들은 국내 인권상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인권기구들이 국제적인 인권문제들과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가 가장 일차적으로 자국내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인권문제들에 관해서도 귀중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는 당면한 국내의 문제점들을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통찰력은 특정 국가나 특정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advise)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될 수 있다.



E.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관련 자문 및 지원

207. 국가인권기준과 국제인권기준 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국가의 헌법에서는 특정한 국제규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헌법의 규정이 없어도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국가가 가입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기준들은 자동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한편, 또 다른 국가의 법률에서는 국제인권규약이 해당 국가의 비준이나 가입 등을 통해 승인 받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국내법에 편입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8. 국제인권기준 이행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와 지원을 하는 국가인권기구는 당사국에 존재하는 특수한 법률적 전통을 따른다.

1. 국제인권규약 이행 관련 자문 제공

209. 정부는 국제인권제도에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로부터 직접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는 국제협약의 비준에 관하여 정부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일반적인 조언 권한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는 정부가 특정 국제규약을 비준함에 따라 지게 되는 의무의 정확한 속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고, 비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규약에 관한 조언을 하려면 국내법이 이미 해당 국제규약의 기준과 부합하고 있는지, 또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연방국가 경우에는 국제규약의 비준이 중앙정부와 주정부들 간의 관

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다.

210. 인권에 관한 법률적 토대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에 의하여, 입법만으로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국제인권기준들을 국내법에 편입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그러한 기준들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가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로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수정, 사회복지사업의 우선 순위와 실제 관행의 변경,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보고 메카니즘 설치, 적극적인 차별철폐제도 및 대중적인 인권 교육의 시행 등이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활동을 통해 이러한 간접적이고 간과되기 쉬운 이행 수단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조언 기능을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기존의 의무나 향후 책임져야 할 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2. 정부보고서 작성 지원

211.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인권규약의 회원국들은 국제규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권규약위원회)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위원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위원회)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아직 발효 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¹⁰⁾

보고서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규약에서 보호하는 특정한 권리나 일단의 권리들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 보고하는 국가가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보고서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회원국 대표들에게 질문을 하며, 국가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적 또는 일반적 논평을 하는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정확하고, 상세하고, 적절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원국은 위원회의 전문지식에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12. 각종 위원회에 제출되는 회원국들의 보고서에는 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부문에 관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그 자신이 인권기준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인권기구의 활동들은 보고서에 포함할 적절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이 해당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내용이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을 다루는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한 회원국의 인권의무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아동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와 기능에 관한 정보를 보고 받을 것이다.

213. 국가인권기구는 그 자신이 정기 보고서의 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제규약에서 정한 의무에 의거하여 유엔 기구 및

위원회들, 그리고 지역인권기구들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의 작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 정확하고, 상세한, 그리고 적절히 작성된 보고서의 중요성은 이미 앞에서도 강조 한 바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특정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갖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14.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의 보고 절차내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및 정부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원을 활용할 의도가 있는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보고서 작성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에 정보, 자료, 또는 통계수치들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일부 국가인권기구들은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인권기구들은 여러 부처 및 기구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취합하는 정보흐름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 경우, 국가인권기구 자신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책임을 부여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국가인권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는 관계 기관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게 된다.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 지원

215.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동 계획 (2편 71절 참조)에서 세계인권회의는 각국에게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천명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할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각국은 각자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권부문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행동계획을 이행할 적절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 국가인권기구가 보유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기구는 행동계획의 초안 수립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과정에 참여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10) 2003년 7월 1일 동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위원회가 설치됨. [참수자주]



| 5장 | 인권침해 조사 활동

A. 서론

216. 국가인권기구가 위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조사 활동이다.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희생자들을 구제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권침해 행위의 강력한 억제 요인으로(powerful disincentive to violative behaviour)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는 인권을 수호하고 국제 및 국내 인권의무를 진지하게 수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7. 효과적인 조사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 적절한 법적 권한
- 효율적인 조직
- 명확하고 적절한 우선 순위
- 조사활동을 수행하려는 정치적 의지

본 장은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 중 앞의 두 가지 특성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선 순위의 설정과 정치적 의지의 존재 여부는, 간혹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별이나 기구별로 다루거나 해결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후자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지원이 없으면 조사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가인권기구는 법적 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218. 본 장은 서론을 제외하고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B항에서는 개인과 집단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고, 해결하는 기구의 체제와 기능을 다룬다. C항에서는 진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 직권에 의하여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논의한다.

B. 진정 조사

1. 진정 제도의 중요성

219. 국가 차원에서 인권 보호의 기본적 체제(basic structure)는 사법부이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권한의 범위 또는 운영의 효율성을 불문하고, 사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법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220. 그러므로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은 추가적인 안전장치, 즉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보완성은 사법제도 또는 기타 제도적 장치들이 해 줄 수 없는 것을 국가인권기구의 진정기능이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



고 있고, 또 인권부문의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진정제도의 구조와 기능은 접근이 용이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1. 국가인권기구가 설치하는 진정제도는 그 유형에 관계없이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진정에 관한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이 좋다. 진정절차의 성패는 주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에 달려 있다. 잠재적 진정인은 민간 집단, 정부관리,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고통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다. 국가인권기구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진정인들에게 그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접수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2. 진정 제도의 수립

(a) 조사 가능한 진정의 범위

222. 진정 허용(admissibility)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하며, 조사 가능한 진정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진정의 대상과 내용을 모두 정해 두어야 한다.

223. 허용 가능한 진정의 대상(object)이란 피고가 될 수 있는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의 집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많은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공공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목적에 따라 진

정의 잠재적 대상을 정부 부처, 정부기구,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은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진정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주거 등 국민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 경우, 진정의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또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

224. 인권침해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가 혁명세력(revolutionary forces) 또는 무장반군 집단들(armed opposition groups)의 행위를 조사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일부는 이러한 집단들의 폭력적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란집단은 명백하게 국법의 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집단이나 이러한 집단과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은 공개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가 이런 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당사국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 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목적, 우선 순위도 감안하여야 하고, 그리고 조직적인 집단들 또는 개인들의 폭력 행위는 형법 체계에서 다룰 사안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5. 진정메카니즘은 허용 가능한 진정의 내용(subject-matters), 즉 진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진정의 내용이 허용 가능한 진정의 대상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옴부즈만 형태의 국가인권기구는 일반적으로 불공정 또는 불법적인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만 진정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226. 옴부즈만과는 다른 형태의 국가인권기구들은 진정의 대상(인권 침해의 행위 주체) 보다는 내용(인권침해 행위)을 직접적인 진정의 허용성 심사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는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의 행위주체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227. 허용 가능한 진정 내용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 또는 국내 법률의 인권보장 조항들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 혹은 권리들을 명시한 국제인권제도, 조사 가능한 침해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허용 가능한 진정내용을 정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는 헌법이 보장하거나 당사국이 가입한 국제규약이 규정하는 모든 인권들의 침해를 조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28. 허용 가능한 진정의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모호하게 책무가 정의되거나 이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권한이 계약위반, 명예훼손 또는 순수한 사적 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범죄 등 다른 사법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다루어 질 수 있는 문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엄격하게 책무를 규정한 경우에도, 국가인권기구는 검토할 사안들의 우선순위를 확립해 놓아야 한다.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자신의 관할권을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써 인적, 금전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 효율적인 국가인권기구라면 관할 문제로 인해 자신의 역량에 대하여 외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로 인해 실제 인권침해 사건이 진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b) 적절한 제한규정

229.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진정의 대상과 내용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제한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며, 이 점에 관해서는 각국이 자신의 문화 및 법적 전통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인권기구가 자신의 설립 목적들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230. 국가인권기구는 일반적으로 진정의 대상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의원 또는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은 다룰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제한규정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체적인 기능들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공공행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민간 집단 또는 개인들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정은 당연히 다룰 수 없다.

231. 대다수 국가인권기구들은 이미 다른 기구가 관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다른 기구가 선거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책임소재에 있어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구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규정은 국가인권기구와 다른 기구의 관할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미 사법부가 심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이 제한된다(81절 참조).

232. 진정의 대상에 관한 제한규정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가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분명하다. 군대를 진정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국가인권기구의 실효성이 손상된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군이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비례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국가인권기구들 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정의 대상을 “부적절하게” 제한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부여받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233.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227절 참조), 진정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법률에 규정된 권리 또는 국내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다루어야 한다. 진정의 내용에 관한 제한에는 보편적으로 이 요건과 국가인권기구가 부여받은 구체적인 책무들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말은 바 책무에 의거해 다른 유형의 차별이 인종차별과 연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별 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

234.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인권기구의 업무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인권은 국제법 상 동등한 그리고 불가분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도 증거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c) 진정대상

235. 국가인권기구의 진정메카니즘은 대부분 모든 사람이 기구의 관할범위 내의 사안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은 “모든 사람(any person)”이라는 용어를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 없는 자나 난민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아동과 수용자도 진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는 법률도 있다.

236. “모든 사람”에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진정절차가 명시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 행위가 한 집단의 구성원 한사람뿐만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집단도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정을 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해석 상의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이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i) 제삼자 진정

237. 진정은 원칙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요건에 관해서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해당 인권침해행위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바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이고, 진정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 자도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238. 그러나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자들이 진정절차와 같은 인권보호 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가 많다. 인권침해를 받은 자가 진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아동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실종된 경우,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 친구, 법률대리인, 또는 관련 비정부기구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진정을 제출하는 대리 진정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ii) 집단진정

239.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집단진정을 접수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사한 인권침해를 받은 다른 사람들을 대리해서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240. 이렇게 대변하여 진정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만연한 문제를 하나의 고립된 인권침해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또, 조사과정이 아무리 철저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구제대책이 아무리 적절하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진정의 해결로는 정부 또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영역에서 필요한 변화를 이루에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241. 집단진정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 또는 해당 진정이 집단진정에 적절한 지를 결정하는 엄격한 요건들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는 특정 진정건을 집단 진정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 진정인이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함
- 진정인이 해당 인권침해 행위로 영향을 받음
-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구성원의 수가 너무 많아 서 개인들의 진정을 단순히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함
-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법률상으로는 사실상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고, 진정인의 주장이 집단 구성원들의 주장들을 대표함
- 다수의 진정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일관적이지 못한 결정들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음
-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집단 전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집단 전체에게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함.

(d) 진정 제출 절차

242. 필요한 경우 구두로도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정은 서면 진술서로 제출된다. 진정은 무료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진정인이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국에, 특히 외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진정을 접수하고, 진정의 준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정은 국가인권기구에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기구 또는 의회의원 등 중재자를 통하면 거의 예외없이 제출과정이 지연되고 복잡해진다.

243.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절차를 적절한 언어들로 명료하게 설명하

는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정인이 직접 사무소에 나와 진정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진정인에게 국가인권기구의 사무소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먼 곳에 거주하는 진정인과 교통수단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진정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244.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사회적 집단이나 소수민족들은 통역사나 숙련된 조력자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신을 통한 진정이 진정과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이 자신의 수혜 대상집단을 독자적으로 분석하여 진정이 보다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245. 지나치게 형식을 중시하는 진정절차는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국가인권기구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조사의 착수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침해에 취약한 자들의 문화적 전통,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들도 진정과정에 장애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의 주장을 진술서를 작성하여 확인토록 하는 요건은 취약한 집단이 빈곤하거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물질적 수단과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고도 불필요하게 진정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형식주의와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와 국가인권기구의 효율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 비밀보장

246. 통상적으로 인권침해의 피해자나 대리자가 진정을 제출할 때는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익명으로 진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익명의 진정의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의 진



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익명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익명으로 진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밀보장을 위한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247. 모든 진정에 있어서, 특히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들은 진정을 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의 접수로부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비밀을 보장하는 체제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비밀보장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f) 진정의 각하

248. 진정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진정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사건이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제출된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249. 그 외에도 검토이전 단계(preliminary stage)에서 진정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이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해당 진정이 유치한 수준이거나(frivolous),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unwarranted), 또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unfounded in law)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그러한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진정과 진정인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이 후자의 상황을 통상 당사자적격 문제라고 부른다.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진정의 근거가 되는 행위의 시점과 진정 시점 간) 시한이 지나서 제출된 진정은 합법적으로 각하될 수 있다.

250. 모든 진정의 각하에 대해서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인에게 각하의 정확한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절차가 있는 경우, 국가인

권기구는 진정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권리들과 다른 모든 가능한 구제절차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진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은 신속히 내려져야 하고 이에 대한 통보 역시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면 진정인이 다른 구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도 국가인권기구가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구라는 대중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3. 진정의 조정

251. 이미 지적한 것처럼, 국가인권기구들은 보완적인 분쟁해결제도이다. 분쟁해결에는 3가지 보편적인 유형들이 있다. 첫째, 국가인권기구와 같은 제 3자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중재(arbitration), 둘째, 제삼자가 구속력은 없으나 강력한 권고를 하는 조정(conciliation), 셋째, 제삼자가 협상 과정을 관장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 합의(mediation) 등이다.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조정과 합의 절차에 관여한다.

252.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진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대신에, 또는 착수하기 전에 조정에 의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조정은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양 당사자를 한 자리에 모으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장점은 국제적 차원에서,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재 자신들이 발간하고 있는 다양한 문서들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253.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권침해, 특히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에서는 조정이 매우 성공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점이 입증되어 왔다. 조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정식 조사 절차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절차와 결과 측면에서 대립적인 요소가 적고, 따라서 처벌보다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에서 특히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간주된다.

254. 조정이 분쟁 해결의 유용한 수단이 되려면 양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절차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조정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제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255.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훈련받은 인력의 전문지식에 도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숙련된 조정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와 기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126절 참조). 진정의 당사자들과 조정자들 모두에게 참고할 만한 지침을 미리 정해 놓으면 조정 절차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정 사건들에 지침을 적용한 사례가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4. 조사

256. 진정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다시 말해, 허용성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국가인권기구가 진정 본안(merit)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의 목적은 인권침해(violation) 또는 불법행위(illegality) (국가인권기구의 책무에 의해 정의된)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어떤 사람 또는 기관에 그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a) 조사 권한

257. 대부분의 경우, 진정사건의 조사는 국가인권기구나 국가인권기구의 직접적인 권한과 통제하에 있는 자들에 의해 수행된다. 국가인권기구는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 훈련받은 직원들과 충분한 재정 수단을 비롯한 일정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58. 이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일정한 기본적 권한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적절한 규칙이 없으며, 진정제도의 속성과 기능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이 진정의 근거가 명백한지, 근거가 명백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은 반드시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없다면 진정절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259. 조사 및 결정 권한(investigative and adjudicative powers)은 인권침해 사건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이러한 권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진정에서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피진정인 혹은 피진정단체에 답변서를 허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진정의 대상에게 혐의를 고지할 권한
- 조사기관이 진정사건의 적절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문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관련 정보의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문서 또는 구두 증언의 형태)
- 필요할 경우, 교도소 또는 구금시설 등을 방문할 권한(visitorial power)을 비롯하여 현장 조사(on-site investigation)를 자유롭게 실시할 권한
- 당사자들을 청문회(hearing)에 소환할 권한
-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witness)으로 출석하는 자들에게 검찰의 면책을 부여할 권한



- 조사기관의 판단으로 인권침해 주장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조사에 조력을 줄 수 있는 모든 개인들을(전문가, 정부기관의 대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기구(private entities)의 대표) 청문하고 심문할 수 있는 권한
- 앞에서 언급한 조사 목적을 위해서 참고인들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선서 하에 증언 또는 서면 증거를 받을 권한, 조사기관이 적절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기구 또는 당국으로부터 문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의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260. 대부분 국가인권기구들의 조사 권한은, 국가인권기구가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기타(불특정한) 활동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완되어진다. 이러한 포괄적 조항은 조사 절차에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의무를 조사 전반에 걸쳐서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b) 조사 절차

261. 충분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조사를 보장할 수 없다.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조사 활동에 적용할 자체 기준과 지침 (절차 규정들 포함)을 수립해야 한다.

262.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독자적인 절차들을 확립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 유용한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침에는 국가인권기구의 책임과 그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권한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지침에는 업무의 유연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명확하게 정의된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확고한 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성과 시기적절성을 위하여 측정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263. 조사 과정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세부적 문제 중에서 어떠한 증거를 인정 가능한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의 기준도 결정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증거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의 “무죄의 추정(beyond reasonable doubt)” 원칙 보다는 민법의 “개연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다수 조사제도들이 처벌보다는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의 균형” 원칙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264. 국가인권기구가 전문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효율적인 조사에 대단히 중요하다. 일부 국가인권기구들은 정부관리들과 경찰관 또는 국가인권기구가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인물들을 선택해 지원을 요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전문가들은 소속기관과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개인 또는 기구와 동일한 부문 또는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을 지원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265. 조사 절차에는 진정을 제출한 자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들을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침해사건의 속성 상 피해자 또는 참고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나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기구는 자체적으로 참고인 보호절차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배정 받아야 한다.



266.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조사 과정에서 방해물 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개인 및 기구들에게 제재조치(sanctions)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방해 또는 비협조로 인하여 조사가 적절히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한 이 문제를 다른 기구에 이첩(refer)하여 검토 또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267. 진정사건의 조사 지침과 기준들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진정인에게 해당 사건의 조사 과정을 알려 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책임 기구라는 대중의 확산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심리를 공개로 진행하고, 조사과정을 일반 대중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공식 또는 비공개 심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 사유를 밝힌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5. 인권침해의 구제

268. 조사가 완료된 다음에(또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시도가 실패한 다음) 국가인권기구가 취하는 조치나 제공하는 구제책관련 권한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일부 국가인권기구들은 처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상급기구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반면, 그 권한이 의회 또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국가인권기구들도 있다.

269.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과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제 조치 역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규칙은 없다. 특정 국가인권기구에 있어서 어떠한 규칙이 적합한가의 여부는 진정절차의 구조와

국가인권기구의 특정한 설립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구제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을 경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없으면 진정이 위축되고, 진정절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

270.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및 구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가 부여받아야 할 권한들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a) 권고 권한

271. 대부분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이 조정을 진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가인권기구의 관할에 따라서, 권고안은 정부기구, 공무원, 민간인 또는 민간조직에 전달된다. 권고안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고, 관행이나 절차를 수정하거나 결정을 재고 또는 취소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과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구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활동이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권고를 할 수도 있다.

272. 권고의 대상이나 내용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권고안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권고를 받아들일지냐의 여부는 권고를 받는 자에게 달렸으며, 강제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내려진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이 문제를 다른 기구에 이첩하여 심사를 받게 할 수 있다. (273절 참조)

(b) 이첩(referral) 권한

273.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이 조사를 했거나 조정을 시도한 사건을 다른



관계기관으로 이첩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첩은 관계부처, 다른 정부기구,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법정, 의회, 사법부, 또는 검찰에 할 수 있다.

274. 이첩의 권한은 진정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2단계 또는 후속 조치로서 행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권고를 받은 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가 권고를 무시하거나, 지정된 시한까지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 합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국가인권기구가 판단할 때, 방해 또는 비협조로 인해 자신의 조사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조사 진행 과정에서 다른 기구 또는 기관이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명된 경우

275. 이첩은 진정사건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사 결과 또는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때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재심사 또는 상소(appeal) 절차는 법률 또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76. 특정 사안과 관련된 국가인권기구의 책임은 해당 사안이 다른 기구에 이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사안이 법원 또는 특별법정에 이첩된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인의 입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사건이 적절하고 완전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첩된 사건의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과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c) 결정 권한

277.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권고와 이첩보다 강력한 각종 구체적인 권한들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구제조치의 유형은 주로 인권침해의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인권침해행위가 해소되거나, 그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특정 행정결정의 철회(reversal), 또는 관행이나 정책의 수정을 명(order)할 수 있다.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는 공개 사과 또는 손해배상 또는 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78. 국가인권기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명령(interim injunctions) 또는 임시구제조치(interim relief)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임시조치들은 일반적으로 진정인의 입장이 조사 또는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는 다른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조사 또는 조정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다.

(d) 강제명령(enforceable order) 권한

279. 국가인권기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명령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심판의 한 당사자가 주어진 기한 내에 국가인권기구의 결정을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이러한 권한을 통해 상급기관(특별법정, 법원 또는 검찰)이 개입하지 않아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실제의 집행절차는 다른 기관의 소관일지라도 국가인권기구는 강제집행 명령을 통해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자신의 권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e) 결정의 공표

280. 국가인권기구가 구제조치에 관한 다른 구체적인 권한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내린 권고안 또는 결정들과 함께, 조사 또는 조정의 결과들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는



직접적인 구제 권한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구제 수단과 함께 주어지는 권한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은 진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진정절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281.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다른 목적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특히 여론에 알리고 논의를 촉발시키는 작용을 한다. 진정내용의 근본적 문제가 광범위한 차별 혹은 불공정성에 있어 의회나 정부부처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공표권은 특히 더 중요성을 갖는다. 조사결과를 공표 하면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현재의 진정인들 뿐만 아니라 향후 진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인 확신을 줄 수 있다.

282. 조사 결과와 결정을 공표할 때는 진정 당사자들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정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C. 직권(*suo moto*)에 의한 조사 혹은 직권에 의한 공개조사 (public inquiries)

283. 국가인권기구는 정식으로 진정이 접수되거나 정부 기구의 요청을 받지 않아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직권에 의하여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284. 직권에 의한 조사권은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다. 아동, 여성, 빈곤층, 노숙자, 정신 및 신체적 장애인, 수

용자, 종교적 소수집단, 소수민족, 소수 언어 집단 등은 모두 그들의 불평등한 지위로 인해서 인권침해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다.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인권과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에 대해 가장 무지한 집단이 바로 이러한 취약 집단이다. 설사 이러한 취약집단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진정을 하기 위해 직접 공공기관을 찾는 것을 매우 꺼리는 상황이다.

285. 정부 부처들이 법적, 행정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기구들에게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같은 기능을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가 및 국제적 인권기준들이 아직까지는 행정조직이나 정부 관리들의 의식 속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인권보호의 원칙을 도외시하면서 주택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숙자 문제 역시 단순히 주택 공급의 문제로 파악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반면에 인권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적절한 주택공급 문제와 더불어 특정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 정신병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도 인권을 염두에 둘 경우에는 법적 보호 차원을 넘어서 치료, 갱생, 교육, 상담, 경제 및 사회적 안정,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 훨씬 광범위한 권리들을 고려할 수 있다.

286. 직권에 의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는 취약 집단들이 사회적 발언권을 갖고,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일반대중이 인권침해에 관심을 갖게 하는 노력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1. 조사를 위한 주제선정

287. 적어도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진정절차는 오늘날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제인권제도 내의 진정절차가 이러한 지표의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심각한 문제들을 식별하고, 부정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국제인권기구가 입수한 정보나 특정 현안에 관련된 정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추세가 파악되면, 관련 기구는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다.

288. 개별 진정을 접수받고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의 지표가 되는 추세 또는 패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접수받은 모든 진정 사건들을 검토한다.

289.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 (284-285절 참조) 때문에 진정절차를 통해서만 현재의 인권상황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문제점들과 잠재적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 중 한 가지로 자신들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공동체 또는 비정부기구들과 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방안들을 들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수혜 대상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상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언론매체도 행정부의 실정, 불법성, 정부 및 민간조직들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적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용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

2. 직권조사 수행

290. 필요한 권한이 주어지고 바람직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면 개별 진정사건의 조사와 그보다 더 일반적인 특정 현안 또는 상황에 관한 조사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개별 사건의 조사와 인권상황의 조사는 조사의 범위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 이외에는 주로 조사의 대상(object)과 관련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291. 이미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개별 진정사건의 조사 목적은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발생했다면 어느 개인이나 기관에 그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일반적 실태조사도 유사한 목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 실태조사는 사회일반의 현안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그러한 인권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관행, 제도, 또는 정책들이 인권침해를 조장했는지, 인권상황을 개선하거나, 인권침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 보다 어려운, 그리고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피해자들을 위해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히 해결될 수 없다. 그 대신,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의 원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안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292. 국가인권기구는 특정 조사에 대하여 “공개(public)”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 배경 문서와 기타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들이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심리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심리의 현안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후속조치

293. 후속조치는 주로 국가인권기구가 진정 없이 착수한 직권 조사에 대해서 부여받은 특정 권한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개별 진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기구는 조사결과에 근거한 권고안을 정부의 관계 부처 또는 기구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 다른 권한들을 이용하여 법률개정의 위한 의회 로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0절 참조)

294.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과는 상관없이,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권고를 받고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권고에 대한 정부기구 또는 의회의 반응을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D. 재판 과정에의 관여

295.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법에 의해 소추된 사건들 또는 자신이 권한을 가진 인권문제들과 관련된 사건들의 재판절차(일반적으로 법정 조연자(*amicus curiae*)의 적요서 제출을 통하여)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법원이 당해 사건이 의미하는 인권문제와 관련 국가적 인권기준 및 국제적 인권기준들을 알릴 수 있다.

296. 재판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leave*)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국가인권기구가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

다. 해당 사건이 인권에 관한 국내법에 의거해서 제소된 경우라면 허가를 쉽게 내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가 해당 사건이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을 때에는, 국내법에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297. 국가인권기구는 자신의 결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다.



| 결론 |

298. 일각에서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전념하는 특별 메카니즘 설치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러한 기구들을 운영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독립성을 확보한 사법부와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만으로도 충분히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99.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한 기구만이 인권보호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기구는 오늘날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

300. 본서는 국가인권기구가 일반인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에 법률과 정책에 관하여 권고하고 지원하며,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본서는 유엔인권센터(현 인권고등판무관실 [감수자주]) 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행한 다양한 연구의 결과물로서, 향후 유엔인권센터가 인권부문의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부록 I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11) 12)}

권한과 책임

1.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a) 정부, 의회, 그리고 그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로서,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특권뿐 아니라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
 - (i) 인권의 보호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법과 관련된 조항은 물론 법률 및 행정입법의 조항들 이와 관련하여 국가

11) 번역: 조용환

12) 1992년 3월 3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1992/54 부록(1992년 경제사회이사회 공식회의록 부속서 2(E)/1992/22), 제2장, A편 및 1993년 12월 20일 총회 결의안 48/134 부록 참조



인권기구는 법안과 입법예고는 물론 현재 시행중인 법률과 행정법령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법령들이 인권에 관한 근본적 원칙과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인권기구는 새로운 입법, 현행 법률의 개정, 행정조치의 시행이나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ii) 국가인권기구가 다루기로 결정한 모든 인권침해상황

(iii)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구체적인 국내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

(iv) 국내의 어떤 지역에서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끝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의견표명.

(b) 국내의 법률, 행정 입법, 관행과 그 나라가 당사국이 된 국제인권규범들 사이의 조화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c) 국제인권규범의 비준 또는 승인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d) 조약에 정한 의무에 따라 유엔의 기구 및 위원회와 지역 인권기구에 국가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 준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보고서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관련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e) 유엔 및 유엔 관련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나라의 국가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f) 인권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 및 전문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g) 특히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이용해

서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문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반대하는 노력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1.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a)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NGO), 노동조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단체

(b) 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c) 대학교 및 자격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구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



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아래 갱신될 수 있다.

활동방식

국가인권기구는 그 운영원칙에서,

- (a)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거나 혹은 그 구성원이나 진정인의 제안에 따라 직권으로 채택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
- (b) 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c) 특히 자신의 의견과 권고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접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여야 한다
- (d)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야 한다
- (e) 구성원들 가운데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및 지방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f) 사법기관 및 (특히 옴부즈만과 중재인 및 유사기관과 같이) 그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책임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g)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 경제 사회적 발전, 인종

주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 (어린이,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 및 정신장애자) 또는 특정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민간단체와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사안은 개인, 그 대리인, 제3자, 민간단체, 노동조합 또는 그밖의 대표성있는 단체들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들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 (a) 조정 또는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방법으로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 (b) 자신의 권리에 관해 진정하는 당사자에게 특히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알려주고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야 한다
- (c) 법률의 범위안에서 모든 고발과 진정을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d)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곤란을 준 법률, 행정입법이나 관행의 개정 또는 개혁을 권한있는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 부록 II |

유관기관 연락처

- 아프리카 민주인권연구센터
(African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Studies)
· 주소: Kairabi Avenue, Banjul, THE GAMBIA
· 전화: (220) 394525/394961
· 팩스: (220) 394962
- 유엔인권센터(Centre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 주소: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 전화: (4122) 907 1234
· 팩스: (4122) 917 0123
- 영연방사무국 인권팀
(Commonwealth Secretariat, Human Rights Unit)
· 주소: Marlborough House, Pall Mall, London SW1Y 5HX, UNITED KINGDOM
· 전화: (4471) 839 3411
· 팩스: (4171) 930 0827
- 유럽인권평의회 인권정보센터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re, Council of Europe)
· 주소: 67075 Strasbourg, FRANCE
· 전화: (3388) 41 28 18
· 팩스: (3388) 41 27 04
- 미주 인권협회(Inter-America Institute of Human Rights)
· 주소: Apartado postal 10-081, 1000 San Jos, COSTA RICA
· 전화: (506) 234 0404
· 팩스: (506) 234 0955
-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 주소: Room 205-D, Weir Library, Law Centre,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T6 G2 H5, CANADA
· 전화: (1403) 492 3196
· 팩스: (1403) 492 4924

| 부록 III |

국가인권기구 관련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 참고 사항

1.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은 유엔이 유엔헌장에 규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국제적인 인권규범들이 각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회원국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공되며, 구체적인 제안의 개발과 이행에 앞서 각 회원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에는 헌법 및 법률 개정, 사법 행정, 사법 행정에 관한 교육의 지원(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 군인, 교도소 인력에 대한 교육), 선거 관련 지원, 국제규약 감시기구들에 제출하는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부 관리들의 교육,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금 제공,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2.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인권센터는 새로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국가인권기구들을 강화하며,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는 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3. 첫째,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정부들을 지원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바로 이 준비 단계에서 기구의 성격, 기능, 권한, 책임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진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일반적으로 정부 당국에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본 적합



한 모델을 권고하고, 법률의 성안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새로 설립되는 국가인권기구가 주요 인사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기준과 절차를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4. 이미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술적 지원은 당연히 기존 법률체제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경우, 국가인권기구를 강화하고,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인력의 교육훈련 포함)을 아끼지 않는다.

5. 국가인권기구 간의 협력관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려는 정부들은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친 국가들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국가인권기구들의 운영에 관여하는 자들은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 국가인권기구들은 합작 활동과 공동 연구 또는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유엔인권센터는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교육훈련코스, 세미나, 워크숍, 정기회의 등 국제적, 지역적, 지방적 활동들의 지원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접촉을 촉진시키고 있다.

6.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주소: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Palais des Nations, 1211 Geneva 10, Switzerland)로 직접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동일한 주소의 기술적 지원팀장(The Chief, Technical Cooperation Branch)에 요청하기 바란다.

| 부록 IV |

국제인권장전¹³⁾

1. 세계인권선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13) 번역: 정인섭



-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

한다.

-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부

- 제 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부

- 제 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

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 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 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부

제 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 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단체의 규약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가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

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 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신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



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

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지직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제 4부

-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 (b)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 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 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 제1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 현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

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 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현장 및 전문기구현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5부

- 제26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27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8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29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31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본을 송부한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 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부

제 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부

제 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원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 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 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 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부

제 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제 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 제 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

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인, 법률에 따라 이루



어진 결정에 의해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의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

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택



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부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이사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출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

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사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 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 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2조 1. 이사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천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 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결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결석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결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결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결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결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



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인되는 궤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궤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는 위원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 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 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

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 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 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 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
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
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는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
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하에서의 인권 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
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
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 5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
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
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부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
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
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
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
된다.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
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
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
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
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
일자



-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를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 제 2조 제1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 제 3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 4조 1. 제3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

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 제 5조 1.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 (a)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 (b) 개인이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에의 견해를 송부한다.

- 제 6조 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 제 7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 제 8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 9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0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1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 제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c) 제12조에 따른 폐기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상기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폐지가 바람직스러움을 강력히 시사하는 문언으로 사형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전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바람직스러우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조 1.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2조 1. 전쟁 중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 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 4조 규약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 5조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 6조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된다.
2.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 제1조 1항에 보장된 권리는 규약 제4조 규정에 의한 어떠한 위반 조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 7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시행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 8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2. 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발효한다.

제 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 (a) 이 의정서 제2조에 의한 유보, 통보 및 통고
- (b) 이 의정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입장표명
- (c) 이 의정서 제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d) 이 의정서 제8조에 의한 의정서의 발효일

제11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하는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규약 제4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참고문헌¹⁴⁾

Commonwealth Secretariat. Human Rights Uni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the commonwealth; directory. 2nd ed., rev. Survey and analysis. Comp. and ed. by John Hatchard. London, 1992, 143 p.

———. Human Rights Uni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manual. By John Hatchard. London, 1993, 148 p.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Directory of ombudsmen and international ombudsman offices, Edmonton (Alberta), 1992.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993. 21 p. (Fact Sheet No. 19)

———. Centre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workshop for the Asia-Pacific region on human rights issues, Jakarta, 26-28 January 1993; report. 1993. 34 p. (HR/PUB/93/1)

———. Division of Human Rights. Seminar on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Geneva, 18-29 September 1978. (ST/HR/SER.A/2 and Add.1)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is, 7-9 October 1991. (E/CN.4/1989/47 and Add.1)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port of the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on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unis, 13-17 December 1993. (E/CN.4/1994/45 and Add.1)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986-1993. (E/CN.4/1987/37; E/CN.4/1989/47 and Add.1; E/CN.4/1991/23 and Add.1; E/CN.4/1993/33)

———.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meeting of representatives of n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omoting tolerance and harmony and combating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Sydney, 19-23 April 1993. 19 May 1993. 45 p. (A/CONF.157/PC/92/Add.5)

———. General Assembly.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on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1981-1987. (A/36/440; A/38/416; A/39/556 and Add.1; A/40/469; A/41/464; A/42/395)

14) 동 참고문헌은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일반적 사안을 다룬 자료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음. 특정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국가인권기구로 연락할 것.



국가인권기구 안내서

| 인쇄일 | 2004년 12월 23일

| 발행일 | 2004년 12월 23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02 2125 9660~5

| F A X | 02 2125 9666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313-7593(代)

ISBN: 89-90475-55-4 93360 비매품

